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Korean)

제정안 관련 공청회 및 의견 개진 기회 통지

어떤 내용의 제정안입니까? HRA는 증액된 장례 지원금 1,700달러의 영구 제정을 제안합니다.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1,700달러의 지원금은 2021년 6월 30일에 종료하고 900 달러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공청회는 언제, 어디서 진행됩니까?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은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공청회는 줌(Zoom)을 통해 2021년 5월 10일 오전 10시에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공청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줌(영상 및 음성):

<https://us02web.zoom.us/j/81765612347>

또는 www.zoom.us 를 방문해 "미팅 참여(Join a Meeting)" 클릭한 뒤, 미팅 ID 817 6561 2347 을 입력하십시오.

전화(음성만):

646-876-9923

미팅 ID: 817 6561 2347

제정안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NYC 규정 웹사이트 <http://rules.cityofnewyork.us> 를 통해 HRA 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NYCRules@hra.nyc.gov 에 의견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목에 "Burials"(장례)를 적어 주십시오.
- 우편. 다음 주소로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HRA Rules
c/o Office of Legal Affairs
150 Greenwich Street, 38th Floor
New York, NY 10007

용건이 장례 지원금(Burials Claims)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라는 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917-639-0413** 번에 팩스로 의견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 "장례(Burials)"를 포함시키십시오.
- **공청회에서 발언. 929-221-7220** 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4월 26일** 당일 또는 그 전에 NYCRules@hra.nyc.gov 로 이메일을 통해 공청회 의견 개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순서대로 발언자를 호명하며 최대 **3분**까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이 있습니까? 의견서 제출 기한은 **2021년 5월 10일** 자정입니다. 우편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포함해 모든 의견서는 **5월 10일까지 HRA**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참석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공청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편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NYCRules@HRA.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929-221-7220** 번으로 전화를 통해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시간을 위해서 사전에 통지 부탁드립니다. **4월 26일**까지 알려주십시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정안에 관해 온라인으로 제시된 의견은 웹사이트 <http://rules.cityofnewyork.u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정안과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의견의 사본, 서신으로 접수된 모든 의견의 사본, 구두로 접수된 모든 의견의 요약본이 HRA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본 HRA 제정안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본 HRA 제정안의 법적 근거는 뉴욕시 헌장(City Charter) 제 603 조 및 제 1043 조, 뉴욕 사회 복지법(New York Social Services Law) 제 141 조입니다.

HRA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HRA 규정은 뉴욕시 규정(Rules of the City of New York) 제 68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이 HRA 규정 의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해당 규정은 HRA가 가장 최근의 규정 의제를 발표할 당시에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제정 과정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까? 신규 제정 또는 개정 시 HRA는 반드시 뉴욕시 헌장 제 1043 조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공지사향 역시 뉴욕시 헌장 제 1043 조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정안의 근거 및 목적

2020년 5월, 뉴욕시 사회복지국/인적 자원 관리국 국장(Commissioner of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DSS/HRA)은 다른 어떤 지원금보다, 임시 비상 규정을 통해 장례 지원금 프로그램을 개정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망한 저소득 뉴욕시민에게 지급되는 장례 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상 규정의 많은 조항은 2020년 8월 31일에 발효한 최종 규정에 의해 영구 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법에서는 최대 900달러까지 장례 지원금의 부분 상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정부는 900달러 이하의 장례 지원금만 부분적으로 상환하며, 9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적으로 지역 사회복지 기관의 지역 기금에서 지출합니다.

120일간 유효했던 해당 비상 규정은 제공 가능한 장례 지원금을 900달러에서 1,7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HRA는 이후 추가적인 제정으로 인상된 지원금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첫 번째 기한 연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자가 대상이었으며, 두 번째 기한 연장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의 신청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저소득 뉴욕 시민들의 장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지원금을 위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HRA는 현재의 1,700 달러 지원금을 프로그램의 영구적인 특색으로 만들기 위해 뉴욕 시의 규칙 제68편 제13장 개정을 제안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DSS/HRA의 법적 근거는 뉴욕 사회 복지법 제141조, 뉴욕시 헌장 제603조 및 제104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텍스트에는 밑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텍스트는 [대괄호]로 표시됩니다.

개정안

뉴욕시 규정 68 편 제 13 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 1 조. 뉴욕시 규정 제 68 편 13-02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02. [임시] 장례 지원금의 인상

반대로 본 편 제 2 장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2021 년 6 월 30 일 이전에 제출한 신청자의 경우], 제 2 장에 명시된 DSS/HRA 에서 지급 가능한 장례 지원금은 1,700 달러이다. 본 지원금은 제 2 장에 정의된 대로 장례 비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세목에 대한 상한을 결정할 때 배제되는 본 장 제 13-01 조 세목 (a) 단락 (1)과 (2)에 명시된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다.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DIVISION OF LEGAL COUNSEL
100 CHURCH STREET
NEW YORK, NY 10007
212-356-4028**

현장 제 1043(d)조에 따른

인증

규정 제목: 장례 지원금 증액 연장

참조 번호: 2021 RG 021

제정 기관: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본인은 본 기관이 뉴욕시 현장 제 1043(d)조에 따라 상기 참조된 제정안을 검토하였음을 인증하며, 상기 참조된 제정안에 대해 다음을 확인합니다.

- (i) 승인된 법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 (ii) 기타 관련 규정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 (iii)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iv)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해당 규정이 부과하는 필요조건과 규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근거 및 목적을 밝히는 진술문을 포함합니다.

/s/ STEVEN GOULDEN
뉴욕시 변호인 대행

날짜: 2021년 3월 29일

NEW YORK CITY MAYOR'S OFFICE OF OPERATIONS

253 BROADWAY, 10th FLOOR

NEW YORK, NY 10007

212-788-1400

현장 제 1043(d)조에 따른

인증/분석

규정 제목: 장례 지원금 증액 연장

참조 번호: HRA-29

제정 기관: 인적 자원 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본인은 본 기관이 뉴욕시 현장 제 1043(d)조의 요건에 따라 상기 참조된 제정안을 분석하였으며, 상기 참조된 제정안에 대해 다음을 확인합니다.

- (i)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별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이며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 (ii)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별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들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 (iii) 본 제정안은 위반과 관련된 위반, 위반사항의 변경 또는 위반사항 처벌의 변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유예 기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s/ Francisco X. Navarro

뉴욕시 시장 운영실

2021년 3월 29일

날짜